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지도위원에게 증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지도위원에게 필요경비 및 교육기회 제공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구 또는 동 단위의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각 동별로 10인 이내의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과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우범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및 정화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동 조례안의 제정은 1995. 12. 29. 법률 제5076호 개정공포된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참여를 조장하여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 지원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유도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에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취지로 판단할 수 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김동휘 위원):안 제6조 지도위원의 수를 각 동별로 10인 이내로 만

하여야 하는가? 수를 늘릴 수는 없는가?

○답변요지(윤병여 시민국장):과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지도위원의 수가 10인 이내로 되어 있었던 것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늘려도 상관없음.

5. 토론요지: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96. 9. 14. 김동휘 위원 외 1인

나.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수정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9. 기타사항:수정안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115 |
|----------|-----|

제출년월일 : 1996. 9. 14.

제 출 자 : 시민보건위원장

1. 수정이유

- 청소년지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를 늘리고자 함.

2. 수정주요골자

-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를 “각 동별로 10인 이내”에서 “각 동별로 20인 이내”로 수정함(안 제6조).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중 “10인”을 “20인”으로 한다.

원안·수정안 대비표

| 원 안 | 수 정 안 | 비 고 |
|--|-----------------------|-----|
| 제6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각 동별로 10인이내로 하되 당해 동 | 제6조(지도위원의 수)20인 | |
| 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 | |
|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 | | |
| 여야 한다. | |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08 |
|----------|-----|

제출년월일: 1996. 9. 10.
제출자: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청소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선도하며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등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도위원에게 증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지도위원에게 필요경비 및 교육기회 제공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 구 또는 동 단위의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5. 12. 29. 법률제5096호) 제15조
- 청소년기본법(1995. 12. 29. 법률제5076호) 제22조

4. 제정조례(안): 따로붙임.

5. 예산조치필요성: 필요있음.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각동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등) ①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의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한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각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7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필요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 또는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구청소년지도협의회의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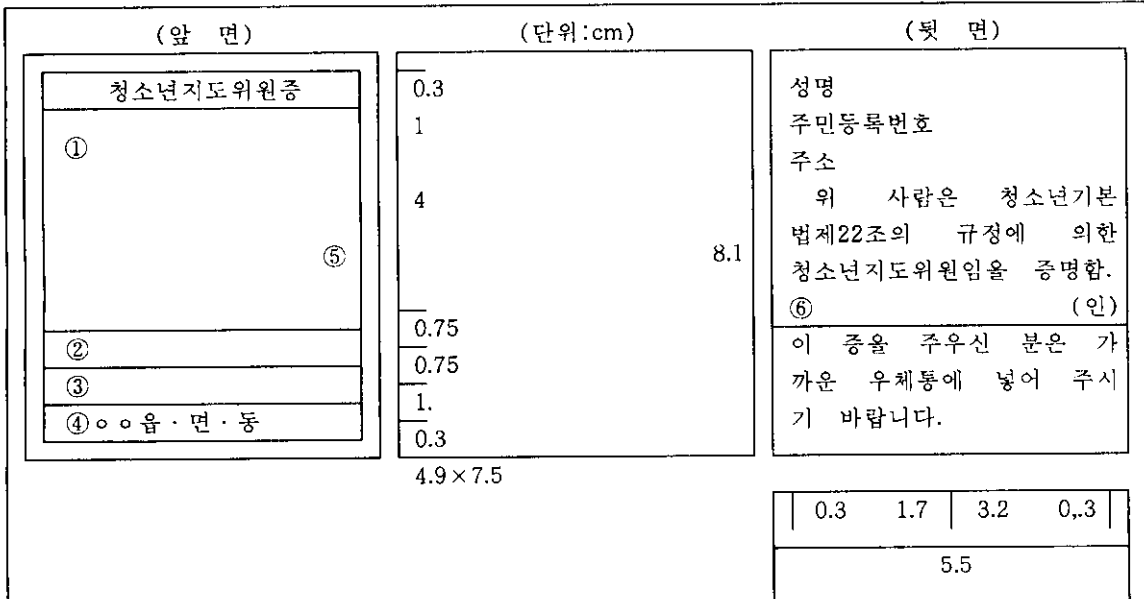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7조 관련)



-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m²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①사진(4.9cm×4cm)
 -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 ③성 명
 - ④소속기관명
 -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다음 페이지에 계속)